

모태펀드(보건계정)

2022년 8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2년도 모태펀드(보건계정) 8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1,000억원 이내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을 적용
출자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펀드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한국벤처투자 : www.kvic.or.kr 한국산업은행 : www.kdb.co.kr 한국수출입은행 : www.koreaexim.go.kr
접수마감 시한	· 2022년 8월 26일(금), 14:00(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펀드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한국벤처투자 및 공동출자자 협의 하에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결성시한 기산시점은 모태펀드의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 및 각 공동출자자들의 출자승인일 중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함(공동출자자는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참조)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¹⁾	최대 출자비율	선정 펀드수	펀드별 최대출자액 ²⁾	신청가능 펀드형태
제약·백신 ³⁾	1,000	5,000 (각 펀드별 2500)	20%	2개	50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해당분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주1) 신청 운용사는 각 펀드별 결성목표액 이상으로 펀드 조성규모를 제안하여야 함

주2) 신청 운용사의 출자요청액은 펀드별 최대출자액과 동일하여야 함

주3)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공동출자자”)이 최대 총 1,000억원*(펀드별 최대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임.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각 공동출자자의 출자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공동출자자별 출자요건(펀드 운용인력 등)은 각 공동출자자에게 문의 요망(연락처는 ‘VI. 문의 방법’ 참조)

* 공동출자자 최대 출자에정금액

(단위 : 억원)

구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동출자 합계
출자에정금액 (펀드별)	450 (225)	300 (150)	250 (125)	1,000 (500)
최대 출자비율	9%	6%	5%	20%

주4) 공동출자자 중 어느 하나의 출자자로부터 출자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모태펀드 및 타 공동출자자의 선정은 자동 취소 됨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제약·백신	○ 보건산업 제약·바이오 및 백신 분야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법인 및 국내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 포함 ①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백신·신약 개발 등의 글로벌 임상시험 실시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포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후 펀드 성립일로부터 4년 이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 ② 백신 분야 국내기업*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장비 관련 연구·개발·생산 기업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백신기업협의체**」에 소속된 기업 ** 「백신기업협의체」에 소속된 기업 명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사항,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 외부 자문단(GP, LP 이외의 주체가 운영)에서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을 운용사에 추천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함. 다만,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한국수출입은행 약정액 이상을 우리기업의 수출입·해외투자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 ○ 중소기업은행 약정액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11의 제7항 관련)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사원 의무출자비율	○ 펀드 약정총액의 1% 이상 * 단, Co-GP의 경우 각 운용사의 출자금액 합계가 “공동운용사 수×약정총액의 1%” 이상이어야 함																			
펀드의 투자의무	○ 펀드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출자금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조기결성방식 (Fast-Closing) 허용	○ 최초 결성액이 최소승인금액*의 75%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 * 최소승인금액은 결성목표액 이상으로 펀드 조성규모를 제안하여 최종 선정된 경우, 펀드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펀드의 최소 결성규모를 의미함 - 조기결성 시의 모태펀드 출자비율은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출자비율과 동일 - 조기결성 시의 공동출자자 출자금액은 출자예정금액(1.개요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 주3))에 최소승인금액 대비 최초결성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 - 선정 펀드가 조기결성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의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 및 각 공동출자자*들의 출자승인일 중 가장 늦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조기결성하여야 하며, 최초 펀드 결성일(조기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펀드결성 최소승인금액 이상으로 결성 완료하여야 함 * 공동출자자는 ‘1. 개요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참조 - 펀드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승인금액 100% 이상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보수 50% 삭감(최소승인금액 100% 이상 모집 시까지) 및 기준수익률 2%p 상향 조정 ※ 세부 내용은 한국모태펀드 및 공동출자자와 정관(규약) 협의 시 결정																			
투자(납입)기간	○ 펀드 성립일로부터 4년																			
존속기간	○ 펀드 성립일로부터 8년																			
관리보수	○ 관리보수 지급기준 - 금액 구간별로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누적 합산 <table><tr><th>기간</th><th>산출기준</th><th>≤500억원</th><th>≤1,000억원</th><th>≤2,000억원</th><th>2,000억원<</th></tr><tr><td>펀드성립일 ~ 2년 이내</td><td>약정총액</td><td rowspan="2">2.00% 이내</td><td rowspan="2">1.20% 이내</td><td rowspan="2">1.00% 이내</td><td rowspan="2">0.80% 이내</td></tr><tr><td>2년 초과 ~ 만기</td><td>투자잔액</td></tr></table>						기간	산출기준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펀드성립일 ~ 2년 이내	약정총액	2.00% 이내	1.20% 이내	1.00% 이내	0.80% 이내	2년 초과 ~ 만기	투자잔액
기간	산출기준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펀드성립일 ~ 2년 이내	약정총액	2.00% 이내	1.20% 이내	1.00% 이내	0.80% 이내															
2년 초과 ~ 만기	투자잔액																			
기준수익률	○ IRR 7% 이상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항 목	내 용
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펀드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 및 공동출자자가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전자보고시스템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및 공동출자자가 사용하는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등 사용 의무
기 타	○ 불가피한 경우, 존속기간은 사원 전원동의를 거쳐 2년 범위내 연장 가능(단, 본건 제안서 상 해당 연장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운용사는 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와 개별 협의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사원 인센티브	○ 운용사는 다음 별도의 업무집행사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업무집행사원 인센티브는 펀드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		
	구분	적용조건	추가성과 보수율
	투자실적	주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실적 중 임상 2상 또는 3상 추진기업(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전체 약정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아래와 같이 우선손실충당하는 구조로 제안하여야 함(필수사항) - 펀드 결성목표액의 10% 이내(펀드별 250억원 한도)에서 모태펀드가 외부 출자자*에게 우선 손실충당 제공하되, 펀드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모태펀드는 우선수익 배분**을 받음 *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 정부, 지자체, 한국 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단, '1. 개요-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의 공동 출자자는 우선손실충당 적용) ** 외부출자자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20%를 모태펀드로 이전하되, 이전한도는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한도금액(펀드별 250억원)과 동일 ※ 세부 적용방법은 정관(규약) 협의 시 결정		

6. 공동출자자별 주요 추가 출자요건

구분	내용
한국산업은행	○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또는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또는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산업경력 및 투자경력은 한국산업은행이 인정하는 경력에 한함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약정금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에 기재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한국수출입은행	○ 공고일 현재 ① '설립 후 3년 이상 운용경력'을 보유하고, ② '운용중인 펀드 약정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 공동운용(Co-GP)의 경우, 최소 1개사 이상 신청자격 충족 필요 ○ 핵심운용인력 3인 이상 참여
중소기업은행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은행 내규상 운용사 출자요건 충족 필요 - 운용사 업력, 규모, 투자실적,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중소기업은행 제안서 양식 별도 제출 필요

* 세부내용은 각 공동출자자에게 문의 요망(연락처는 'VI. 문의 방법' 참조)

7. 기타 사항

- 신청자격을 갖춘 3개 이상(Co-GP의 경우 1개로 간주)의 운용사가 지원하지 않아 복수의 운용사간 경합이 성립되지 않거나,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사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펀드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 운용사는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관련)
- 펀드 명칭에 "K-바이오백신 펀드"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 운용사 선정 이후 세부적인 출자조건은 펀드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모태 펀드 및 공동출자자 협의 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구 분	상 세 내 용
LP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소관법령상 출자 가능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의향서)만 인정
출자비율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2%p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단, 결성목표액을 상향하여 제안하여야 함(모태펀드 출자 요청액 하향 불가)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유의사항>

본 공고문상의 내용은 모태펀드의 심의대상 제외 등에 대한 기준이며, 공동출자자(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별로 심의대상 제외·선정배제·선정보류·선정취소 등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 상이함. 이에 따라 모든 공동출자자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필요 (각 공동출자자에게 문의)

* 공동출자자별 연락처는 'VI. 문의 방법' 참조

추후 펀드운용 시에도 핵심운용인력 변경, 총회안건 등 사후관리 사안 발생시에는 한국모태펀드 및 각 공동출자자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 필요 (사안 발생시 각 공동 출자자에게 문의 및 사전협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사원이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사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사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 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펀드(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②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선정배제

나. 신청 펀드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펀드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마.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펀드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 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가.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사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최소승인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사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라. 출자심의회에서 펀드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의 겸직 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겸직 상태 : 펀드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펀드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 펀드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사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펀드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 등으로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1차 결성시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해당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펀드가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당해 펀드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선정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펀드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2. 8. 18.(목) 10:00부터 '22. 8. 26.(금) 14:00까지	제안서 접수(온라인)	-
선정	'22.9월(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완료	-

* 결성 관련 세부내용은 'I. 개요-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의 펀드 결성 시한 참조

Ⅳ. 지원 방법 및 질의응답

구분	내용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http://install.kvic.or.kr
출자 설명회(안)	- 일시 : 2022. 8. 9.(화) 14:00 - 장소: 한국벤처투자 지하 1층 밸류업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 방식 :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신청 : 참석 희망자는 '22. 8. 8.(월) 14:00까지 <u>회사명, 성명, 직위, 연락처,</u> <u>참석방식(온라인/오프라인)</u> 등을 기재하여 아래의 메일로 참가신청(온라인 신청자에게는 URL링크 발송 예정) * 신청메일 : jhj12@kvic.or.kr

* 상기일정은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 출자사업 관련 질의응답(Q&A)은 '22.8.10.(수) 이후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 문의 방법

- 출자사업 관련 문의 : 02-2156-2223, 02-2156-2182, cykim@kvic.or.kr
- 온라인 접수(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전산실(데이터센터) :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 공동출자자 연락처
 - 한국산업은행 : 02-787-0668, kdbindirect@kdb.co.kr
 - 한국수출입은행 : 02-6255-5105, jisuklee@koreaexim.go.kr
 - 중소기업은행 : 02-2031-3616, mdk@ibk.co.kr

2022. 8. 4.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청 펀드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펀드와 신청 펀드를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의 수가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펀드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펀드가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한도>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펀드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펀드의 약정액(신청 펀드 포함)을 각 펀드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펀드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펀드 규모 산정

- 신청펀드 또는 기존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펀드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펀드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한도>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펀드를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별첨 2>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조기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